

서울특별시 영등포구 평생학습 지원 조례(안)

의안 번호	228
----------	-----

제출년월일 : 2006. 4. .

제 출 자 : 영등포구청장

1. 제정이유

「평생교육법」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국민의 평생학습기회를 확대함으로써 삶의 질을 높이고 평생학습도시 조성사업을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하여 그에 필요한 기구의 설치·운영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함.

2. 주요내용

가. 평생학습협의회 설치 및 구성 (안 제4조 및 제6조)

- 평생학습협의회 : 위원장 포함 1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
 - 위 원 장 : 부구청장
 - 부위원장 : 위원 중에서 호선
 - 위 원 : 영등포구에 재직 중인 국·과장급 공무원과 구의원, 평생교육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 자
- 평생학습협의회의 기능 (안 제5조)
 - 평생학습에 관한 기본계획 수립 및 운영에 관한 사항
 - 평생학습센터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사항
 - 기타 평생학습 시책에 대하여 구청장이 부의하는 사항
- 위원의 임기 (안 제6조제3항)
 - 2년, 연임가능 (단, 직위를 정하여 임명 또는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에 재직하고 있는 기간으로 함)
- 회의소집 (안 제7조)
 -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
 - 구청장이 부의하는 안건이 접수되었을 때
 - 재적위원 3분의 1이상의 회의소집 요구가 있을 때

- 구 소속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해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, 여비 등 지원 (안 제12조)

나. 평생학습센터 설치 및 운영

- 영등포구 평생학습센터 설치 및 운영 (안 제8조)
- 평생학습센터의 기능 (안 제9조)
- 학습참여자와 평생학습단체 및 시설 등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운영비와 학습경비를 지원 (안 제10조)
- 평생학습센터가 관리 운영하는 시설의 이용자로부터 이용료 또는 수강료 징수 (안 제11조)

3. 참고사항

가. 관계법령 : 평생교육법 제9조 (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임무)

나. 예산조치 : 2006년 추경예산 편성 시 수당 등 필요경비 편성

다. 합 의 : 기획예산과 합의

라. 입법예고(2006. 3. 7 ~ 3. 17)결과 : 별첨

따로붙임 :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평생학습 지원 조례(안)

서울특별시 영등포구 평생학습 지원 조례(안)

제 1 장 총 칙

제 1 조 (목적) 이 조례는 「평생교육법」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국민의 평생 학습기회를 확대함으로써 삶의 질을 높이고 평생학습도시 조성사업을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하여 그에 필요한 기구의 설치·운영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
제 2 조 (정의) ①“평생학습”이라 함은 학교교육을 제외한 모든 형태의 조직적인 학습활동을 말한다.

②“평생학습센터”라 함은 평생학습에 대한 연구, 평생학습종사자에 대한 연수 및 평생학습에 대한 정보의 수집·제공 등의 기능을 수행하는 시설을 말한다.

③“평생교육사”라 함은 대학에서 평생교육관련 과목을 일정학점이상 이수한 자 또는 평생교육법 제18조의 규정에 의한 평생교육사 양성기관에서 소정의 과정을 이수한 자를 말한다.

제 3 조 (기본원칙) ①서울특별시영등포구청장(이하 “구청장”이라 한다)은 평생학습을 통하여 양질의 교육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지역 경쟁력을 향상시키고 배움과 나눔이 실천되는 평생학습도시를 건설하기 위하여 노력한다.

②구청장은 구민 누구나 언제 어디서나 원하는 학습을 받을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기 위하여 평생학습 지원정책을 적극 추진한다.

제 2 장 평생학습협의회

제 4 조 (설치) ①평생학습에 관한 주요 사항을 심의·의결하고 평생학습 진흥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협의회를 둔다.

제 5 조 (기능)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의 조정하고 구청장의 자문에 응한다.

1. 평생학습에 관한 기본계획 수립 및 운영에 관한 사항
2. 평생학습센터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사항
3. 기타 평생학습 시책에 대하여 구청장이 부의하는 사항

제 6 조 (구성) ①협의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1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.

②위원장은 부구청장으로 하고 위원은 영등포구에 재직 중인 국·과장급 공무원과 구의원, 평생교육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하며,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.

③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, 연임할 수 있다. 다만,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하며, 직위를 정하여 임명 또는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에 재직하고 있는 기간으로 한다.

④협의회는 관련 업무수행에 필요한 경우 관계공무원·관계전문가·기타 관련자 등을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자료 및 서류의 제출 등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.

⑤이 조례에 규정된 사항 이외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협의회회의의 결을 거쳐 위원장이 별도로 정한다.

제 7 조 (회의 등) ①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 위원장이 소집한다.

1.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
2. 구청장이 부의하는 안건이 접수되었을 때
3.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회의소집 요구가 있을 때

②협의회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.

제 3 장 평생학습센터

제 8 조 (설치) ①구청장은 구민이 원하는 행복한 평생학습도시를 조성하기 위하여 평생학습센터를 설치·운영한다.

②구청장은 평생학습센터에 평생교육사와 운영에 필요한 직원을 둘 수 있다.

③구청장은 평생학습센터의 효율적인 관리·운영을 위하여 평생교육 관련 비영리법인 또는 학교법인에 위탁할 수 있다.

④평생학습센터를 위탁 운영하는 경우에 위탁자의 모집은 공개모집을 원칙으로 하며, 위탁기간은 3년으로 하되 필요한 경우에 3년 단위로 재위탁 할 수 있다.

⑤위탁자의 선정기준, 방법, 절차 등에 대하여는 「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 조례」의 규정을 준용한다.

제 9 조 (평생학습센터의 기능) 평생학습센터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.

1. 평생학습도시 정책 개발 및 연구
2. 평생학습 프로그램의 개발 및 운영
3. 평생학습관련 기관·단체 및 시설의 연계 지원
4. 평생학습에 관한 정보의 수집 및 제공
5. 평생학습 종사자의 전문성 향상을 위한 사업
6. 학습동아리 조직과 활동 지원에 관한 사항
7. 평생학습 특화사업 추진에 관한 사항
8. 기타 평생학습 진흥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

제 10 조 (운영비 등 지원) 구청장은 평생학습의 활성화를 위하여 학습참여자와 평생학습단체 및 시설 등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운영비와 학습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.

제 11 조 (수강료의 징수 등) ①구청장은 평생학습센터가 관리·운영하는 시설의 이용자로부터 이용료 또는 수강료 등을 징수할 수 있다.

②수강료 징수는 수익자부담 원칙과 공공성을 고려하여 합리적으로 정하여야 하며, 평생학습강좌 운영 활성화를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판단될 때에는 협의회 의견 고려하여 일부 강좌의 운영을 무료로 할 수 있다.

제 12 조 (수당 등) 협의회에 출석한 위원 및 관계전문가 등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수당, 여비 등을 지원할 수 있다. 다만, 구 소속 공무원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.

제 13 조 (시행규칙)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.

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입 법 예 고 결 과 요 약 서

의견제출자	제 출 의 건	조 치 내 용
<p>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 전문위원 (김찬재)</p>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제2조로 '용어의 정의' 신설요구 ○ 제6조제3항과 제9조제3항은 제11조 조항과 중복되므로 삭제요구 ○ '평생학습과 '평생교육' 용어가 혼용되어 차이점이 있다면 정리해야할 것임 ○ 평생학습센터를 위탁운영 하는 경우의 모집방법 및 위탁기간, 위탁자의 선정기준 등에 대한 조항 신설요구 ○ 전체 조문을 제1장, 제2장, 제3장으로 나누어 짜임새 있게 정리가 필요함 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반 영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제2조(정의) 신설 ○ 반 영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제6조제3항 및 제9조 제3항 삭제 ○ 일부 반영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개념상 차이점은 없으나 요즘 학습자 주도적인 개념으로 '평생학습' 용어를 주로 사용하므로 적절히 혼용함 - 제7조(평생학습센터의 기능)의 5호와 7호 '평생교육'을 '평생학습'으로 변경 ○ 반 영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위탁자의 모집방법 및 위탁기간에 대해 제6조 제4항 신설 - 위탁자의 선정기준 등에 대해 제6조제5항 신설 ○ 반 영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전체 조문을 제1장 총칙, 제2장 영등포구평생학습 협의회, 제3장 영등포구 평생학습센터로 구성하고 각 기능별 정리 - 제2조(평생교육의 진흥)를 제3조(기본 원칙)으로 변경하고 1항의 '..... 노력하여야 한다'를 '.....노력한다'로 수정